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검토보고서

2022. 6.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지침은 2022.6.10. 유영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6.10.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임(의안번호 : 2758호).

2.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침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의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마. 예방교육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고충상담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사.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아.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징계와 재발방지를 규정함(안 제19조,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국가기관등의 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방지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상위법에 명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그에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장,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방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고충상담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2부터 제14조까지는 조사 등과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9조와 제20조는 징계와 재발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종합 의견

○ 본 지침 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 관련 상위법에 기반 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의회 구성원 각각에 대한 책무와 고충상담창구 설치,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그리고 징계와 재발방지를 규정한 안입니다.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 있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으로 타당한 지침 안이라 보고 드립니다.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1. 4. 2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6. 5. 29., 2021. 1. 12.〉

② ~ ⑫〈생 략〉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7. 13.〉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